#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8

발의연월일: 2024. 7. 4.

발 의 자:윤종군·서미화·정을호

허 영・백혜련・강유정

이재강 · 양문석 · 추미애

김성환 · 노종면 · 윤건영

부승찬 • 박성준 • 정진욱

모경종 • 송재봉 • 안태준

임광현 · 정준호 · 김우영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 법률 제 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위원 자격요건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한 때 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핵 소추의 의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의소추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생  |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① (현 |  |  |
| 략)                 |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  |
| <u>&lt;신 설&gt;</u> | ② 국회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    |  |  |
|                    | 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인    |  |  |
|                    | 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    |  |  |
|                    | 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     |  |  |
|                    | 할 수 있다는 위원 자격요건에    |  |  |
|                    |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     |  |  |
|                    | • 반복적으로 한 때에는 탄핵    |  |  |
|                    | 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
|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  |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
| <u>&lt;신 설&gt;</u> | 5.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   |  |  |
|                    | <u>람</u>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